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1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김승수・박성훈・강선영

박성민 • 조승환 • 서지영

박준태 • 이인선 • 구자근

강대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.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또한,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등교·하교 교통지도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보행안전을 보다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

사람을 이 법에 따른 '교통안전요원'으로 정의하고,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"를 "경찰공무원, 경찰보조자 또는 교통안전요 원"으로 한다.

3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나목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(이하 "교통안전요원"이라 한다)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한할 수 있다"를 "제한하거나 등교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준 등에"를 "기준, 등교·하교 시간대의 기준, 통행금지·제한 등에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	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		
무)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	무) ①		
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			
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			
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	
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			
라야 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3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		
	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		
	나목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		
	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		
	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		
	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		
	는 사람(이하 "교통안전요원"		
	<u>이라 한다)</u>		
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, 차	2		
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			
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			
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			
통정리를 하는 <u>경찰공무원 또</u>	<u>경찰공무원, 경</u>		
는 경찰보조자(이하 "경찰공무	찰보조자 또는 교통안전요원		

원등"이라 한다)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 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 에 따라야 한다.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 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 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#### 1. ~ 5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<u>기</u> <u>준 등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 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해제 및 관리) ①
<u>제한하거나</u> 등교·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
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
<u>기준,</u> 등교·하교 시간대의 기준, 통
<u>행금지·제한 등에</u>